

대전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합106716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20나1347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합106716 판결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윤현진

피고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승

담당변호사 김연수

변론 종결 2020. 5. 20.

판결 선고 2020. 6. 10.

주 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049,403원 및 그 중

91,661,404원에 대하여는 2019. 4. 26.부터, 136,346,152원에 대하여는 2019. 5. 21.부터 각

2019. 9. 18.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8. 11.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28. 접수 제1831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제1신용보증약정	대출보증	2012. 06. 27.	2013. 06. 26.	90,000,000원
제2신용보증약정		2014. 04. 04.	2016. 04. 01.	15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와 B는 원고에게 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①의 약정지연손해금율은 2019. 4. 26.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나. 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 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F 주식회사(이하 'F은행'이라 한다)로부터 1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2018. 12. 19. 피고 회사의 신용관리정보등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4. 26. E은행에 91,661,404원을, 2019. 5. 21. F은행에 136,346,15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위 각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041,847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B와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 B는 2018. 11. 27.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8.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28. 접수 제18314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C: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049,403원(= E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91,661,404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36,346,152원 + 법적절차비용 1,041,847원) 및 그 중 91,661,404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9. 4. 26.부터,

136,346,152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9. 5.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9. 9. 18.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8. 12. 19. 피고 회사의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2019. 4. 26.과 2019. 5. 21. E은행 등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실제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당시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 B의 채무상태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현석

판사김수한

판사김다슬

별지